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02. 00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171호, 2024.1.30. 공포, 2025.7.31. 시행)됨에 따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 통보 범위를 시장·군수·구청장까지 확대(안 제2조)
- 나.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·평가에 관하여, 법률 제4조에 따라 「지역보건법」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·평가 절차와의 정합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 등에 운영 효율성을 높임(안 제3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한다)”를 “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3항에 따라 제출된”을 “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”으로, “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”를 “제3항에 따라 평가한 평가결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, 그 시행 결과는 매 시행연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시·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, 그 시행 결과는 매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부집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

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
1.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과의 부합성
 2.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추진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
 3.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추진 내용의 충실성
 4.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시행 결과의 목표달성도
 5. 그 밖에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
-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	제2조(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조(세부집행계획의 수립·평가) ① <u>시·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·평가하여야 한다.</u>	제3조(세부집행계획의 수립·평가) ①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시행연도 1월 31일까지, 그 시행 결과는 매 시행연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
② <u>보건복지부장관은 세부집행</u>	② <u>시·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</u>

계획의 수립·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 및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을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의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세부집행계획과 같은 항의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한 해당 연도의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세부집행계획 또는

및 제4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, 그 시행 결과는 매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부집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
1.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과의 부합성
2.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추진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
3.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추진 내용의 충실성
4.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시행 결과의 목표달성도
5. 그 밖에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

④ -----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-----

<u>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</u>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. ⑤ 시·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	<u>제3항에 따라 평가한 평가결과</u> ----- ----- ----- --.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509